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30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

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지방자치단체 공동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공동 설립하거나,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 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을 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 제4조제1항은 주민복지 증진 또는 지역개발 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항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지 문구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 출자·출연을 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도 공동 설립과 마찬가지로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① 현행법 제4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설립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는 점, ② 이미 (주)킨텍스¹⁾와 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지방출자·출연기관([참고] 참조)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시 그 세부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간의 공동 설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으로 보인다는 점과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문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 ㈜킨텍스는 경기도 33.33%, 고양시 33.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3.33% 출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임.

① 규모: KINTEX는 국내 최대인 10만㎡ 전시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완공되는 제3전시장으로 총 17만 8천㎡의 전시면적이 확보될 예정

② 활동: 대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시 지원산업 육성 및 첨단 전시기술기반 산업 유치 뿐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한 지자체 문화관광 여건 개선 등 대한민국 MICE 산업 발전을 지향

③ 경영가치: 글로벌 전시장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내 MICE산업의 대표 ESG 경영 표준모델을 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MICE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조문 구조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시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상호 규약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간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조문 구조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시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상호 규약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간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안 제4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의 효력 및 상호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u>지방자치단체 외의 자</u>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 ----- ----- ----- ----- ----- 다른 <u>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u>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

<신 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1. 출자·출연 기관 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 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하 여 그 다른 지방자 치단체가 설립·운 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또 는 제4항-----	<u>약을 정한다</u> 1. ~ 2. (개정안과 같 음) 3. 설립 지방자치단 체 및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 4. ~ 7. (개정안과 같 음) 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3 항-----
--	--	---

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 ----- ----- -----.
③ (생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개정안 제6항과 같음)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생략)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u>제4조 제3항</u> 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② ----- ----- ----- ----- ----- ----- <u>제4조</u> <u>제6항</u> ----- ----- ----- -----	② ----- ----- ----- ----- ----- ----- <u>제4조</u> <u>제5항</u> ----- ----- -----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u>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u>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③ ----- <u>제1항</u>----- ----- ----- <u>설립</u> <u>· 운영의 타당성</u> -- ----- ----- ----- -----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u>	----- ----- ----- ---. ----- ----- ----- ----- -----. 1.·2.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 -----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	---	---

	<u>터 시행한다.</u>	<u>은 공포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u>제2조(다른 지방자치</u> <u>단체와의 출자·출</u> <u>연기관 공동 설립</u> <u>의 효력 및 상호 규</u> <u>약에 관한 적용례)</u> <u>제4조제1항·제2</u> <u>항의 개정규정은</u> <u>이 법 시행 당시 공</u> <u>동 설립하여 운영</u> <u>중인 지방자치단체</u> <u>의 출자·출연기관</u> <u>에도 적용한다.</u>
--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을 “제1항”으로, “설립 타당성”을 “설립·운영의 타당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의 효력 및 상호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 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 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 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 연하거나 <u>지방자치단체 외의 자</u>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 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 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 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 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 연과 대상 사업 등) ① ----- ----- ----- ----- ----- --- <u>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 방자치단체 외의 자</u>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 호 규약을 정한다</u>		
		<u>1. 출자·출연 기관의 명칭</u>		
		<u>2. 사무소의 위치</u>		
		<u>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 치단체 외의 자</u>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

<u>조제3항</u>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u>출자·출연기관</u>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u>설립 타당성</u>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u>조제5항</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③ ----- <u>제1항</u>----- ----- ----- <u>설립·운영의 타당성</u> ----- ----- ----- ----- -----. ④ (현행과 같음)
---	---